

해상적하보험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 해상적하보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Master 및 House B/L(선하증권) /AWB(항공화물수취증) 및 이면약관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량 및 중량명세서(Packing list) •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 • 보험금신청서/사고경위서(유첨) : 예상손해액 반드시 기재요망 • Notice of Claim(보험금신청서 참조) : 최종 B/L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작성요망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유첨) : 날짜기재/명판날인 • 화물의 손상사진 • 인도인수증(Delivery Note / Receipt / Tally Sheet)
항공 화물 추가 서류	• 반입화물실시명세서(Cargo Inspection Report / Convention) : 항공사에 요청 • 포장당 분실의 경우 : 항공사의 분실확인서
해상 LCL 추가 서류	• 보세창고입고확인서(Cargo boat Note / Warehouse Convention / Outturn Report/ Devanning Report / Unstuffing Report) : 보세창고(CFS)에 요청 • 적하목록(Consolidated Manifest) : CFS 에 요청
해상 Bulk 추가 서류	• 본선적부계획도(Stowage Plan) : 하역사에 요청 • 양하협정서(Outturn Report / Convention / Cargo Boat Note) : 하역사에 요청 • 화주측 또는 하역사측 Surveyor 의 보고서(Survey Report) •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선사에 요청 • 해난보고서(Sea Protest) 및 항해일지(Log Book) : 선사에 요청 • Shortage 사고의 경우 : 선적항 및 하역항의 계근표(Weighing Slip) / 선적항 및 하역항에서 발행된 흘수검정보고서(Draft Survey Report)
해상 FCL 추가 서류	• 컨테이너 운송기사 확인서 • 화물적입보고서(Stuffing Report) 및 화물적출보고서(Devanning Report) • 컨테이너손상확인서(수출국/수입국 Container Damage Report 또는 Exception List) • 기기인수도증(수출국/수입국 EIR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컨테이너적부계획도(Container Bay Plan)

Notice of Claim 문서 안내

보험자가 과실이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Date 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에 사고내용을 통지한 날짜를, TO 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의 영문이름을, Attn 에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Tel 및 Fax 번호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명판날인하신 후 선사(또는 항공사) 및 포워더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시고 저희에게 CC 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Notice of Claim 은 피보험자가 화물손상에 대하여 양하시점에서 기산하여 항공운송업자(실제운송항공사 및 포워더)에게는 14 일 이내에, 해상운송업자 에게는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기일이내 운송인에 대한 서면 사고통보 불이행시 운송사는 운송증권(B/L 또는 AWB) 이면약관에 의거 운송화물의 손상/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경우(항공운송의 경우)가 있습니다.

적하보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송인 수탁인 또는 기타 책임있는 제 3 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의 보전 및 행사
2.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운송인, 혹은 기타 제 3 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이며 특히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 가. 운송인/항만당국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손상 또는 유실물에 대하여 즉시 보상청구해야함 (Pre-claim Notice / 운송화물클레임통지서)
 - 항공일 경우 항공사로 14 일 이내에 접수.
 - 나. 해난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수령증을 교부하 면 안됨 (이상이 없다는 수령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상이 있더라도 수령이후에 발생한 손상으로 간주되어 보 험금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 컨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 을 검사할 것.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 멸실되었거나 선적서류 상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그 봉인을 증거로 보관해야 함.
 - 라.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 검정시 밝혀진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해야함.
 - 마. 화물을 인수한 때에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 후 3 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손상내용을 통지해야함.

국내 수입전에 대한 사고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귀사께서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로부터 통지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아래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출전에 대한 사고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consignee)가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로부터 통지를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현지Chubb그룹의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당사 연 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락처 (회사명 / 회사주소 / 담당자명 /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를 알려주시면 사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담당자

- 수입화물 담당자 연락처: 02-2127-2382
- 수출화물 담당자 연락처: 02-2127-2447

Chubb. Insured.SM